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전략물자 수입시



일본 수출규제 대응안내



규제조치 개요

일본은 '19.7.1, 신뢰관계 훼손 및 부적절한 사안 발생등 모호한 사유를 들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발표

- '19.7.4 부터 3개 특별조치 품목을 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

불화수소

레지스트

폴리이미드

- '19.8.28 부터 화이트국가 목록에서 우리나라 배제
※지역구분 명칭을 화이트국 / 미화이트국에서 그룹 A~D로 변경함을 발표하고 우리나라를 그룹 B에 배치('19.8.2)

화이트국가(現 그룹 A) 배제시 주요 변경사항

- (전략물자) 3개 품목 이외의 전략물자에 대해서도 포괄허가(다수 수출 건 종합 허가)에서 개별허가(수출 건별 허가)로 전환

구분	규제조치 전	규제조치 후
허가종류	일반포괄수출허가	개별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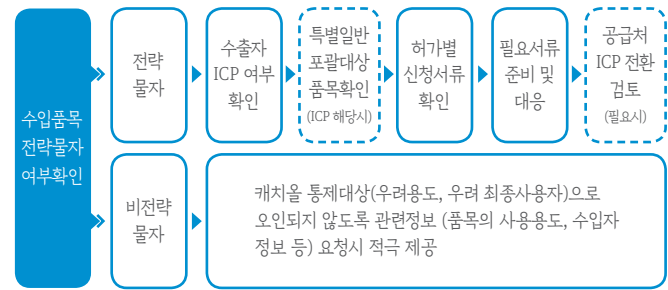
*일부 수출기업(ICP기업)은 특별일반포괄허가 이용 가능 (3개 품목은 불가)

유효기간	통상 3년 1주일 이내	통상 6개월 90일 이내
처리기간	허가신청서 등 2종	통상 3종 (품목별 최대 9종)
허가 신청서류		

- (비전략물자) 화이트 국가 배제시 캐치올(Catch-all) 통제 적용대상으로 전환

캐치올 통제	미적용 (품목별 최대 9종)	적용 (통제요건 확인 필요)
--------	--------------------	--------------------

수출규제 대응절차



일본 수출허가제도 개요

전략물자(수출령 별표 1의 제1항~제15항)를 수출하는 경우 목적지와 관련없이 경제산업성의 수출허가 필요

*단, 목적지가 화이트국가인 경우 또는 수출자가 ICP기업*인 경우는 다수 수출건을 종합적으로 신속히 허가하는 포괄허가제도 가능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위한 내부자율준수규정(Internal Compliance Program)을 경제산업성에 제출하여 접수증을 발급받은 기업**

3개 특별조치 품목

- 모든 종류의 포괄허가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개별허가 신청 필요
- 개별허가만 사용 가능함에 따라 재고량 및 소비량을 사전 파악 후, 수출허가 소요기간(통상 90일 이내)을 고려하여 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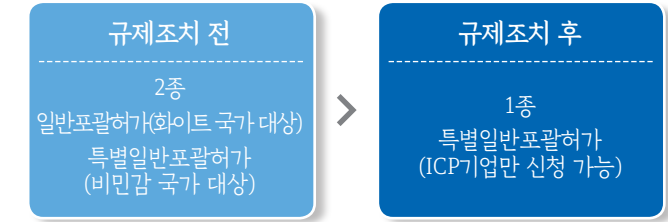
구분	주요내용
유효기간	6개월
신청방법	전자/우편/방문 신청 중 선택
처리기간	90일 이내
신청 서류 (서류 타입)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C) ① 허가 신청서 ② 허가 신청내용 명세서 ③ 계약서 등 ④ 통제목록 (수출령 별표1)과 사양 대비표 ⑤ 카탈로그 / 사양서 등 ⑥ 수요자 사업내용 및 존재 확인을 위한 서류 ⑦ 수요자 등 서약서 및 사본
	불화수소 (D1) ⑧ 수요자(또는 예상되는 수요자)의 해당품목 조달실적 및 최종제품 생산현황 관련 자료 ⑨ 해당 품목을 사용하는 플랜트의 최종제품 제조 절차에 관한 자료

- ⑥~⑨는 수입자의 정보 제공을 필요로 하는 서류인 바, 이를 미리 구비·제공하여 수출자의 신속한 허가신청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람, 양식 및 작성 요령은 다음 경로 참조
일본규제 바로알기 홈페이지》제도·품목》각종 양식

3개 특별조치 품목 이외의 전략물자

- 수출자가 ICP기업인 경우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적용, 대다수 전략물자를 종전과 같이 신속히 공급받을 수 있음



- 납기가 중요한 전략물자를 수입하는 경우 공급처를 ICP 기업으로 전환 검토

※특별일반포괄허가 적용가능 품목은 비민감 품목 중 3개 특별조치 품목을 제외한 품목이며, 민감 / 비민감 품목 색인은 일본규제 바로알기 홈페이지의 품목안내 메뉴에서 확인 가능

※일본 ICP기업 목록은 일본규제 바로알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기업명 또는 취급품목으로 ICP 검색 기능 제공)

<일본규제 바로알기 홈페이지 : ICP 검색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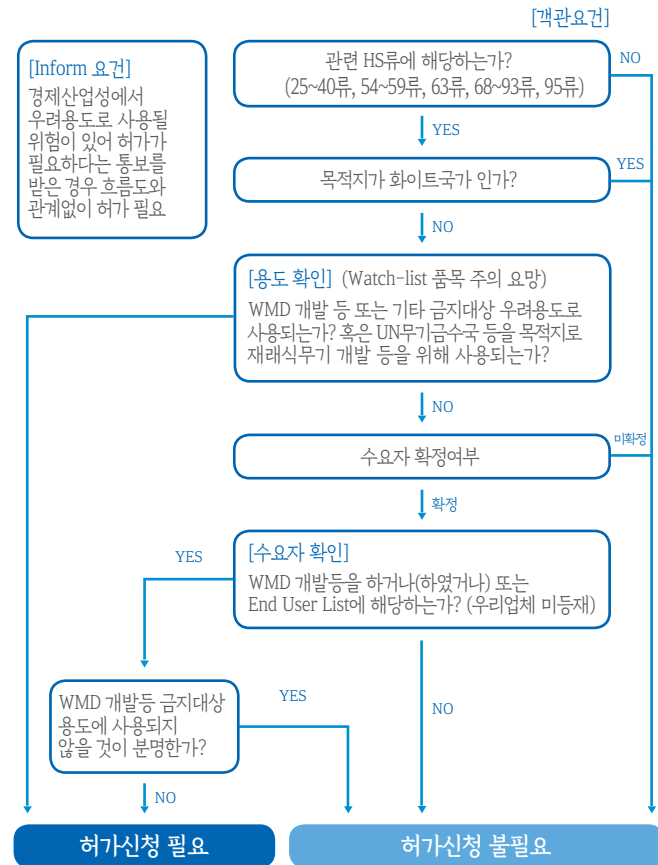
- 포괄허가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개별허가 신청 필요. 신청서류는 최대 3종

구분	주요내용
신청 서류 (품목별 상이)	A ① 허가 신청서 ② 신청 이유서 (품목 사용목적, 사용방법 등 정보제공 필요) ③ 계약서 등
	B1 ① 허가 신청서 ② 허가신청내용 명세서 (거래상대방, 최종수요자 정보제공 필요) ③ 계약서 등

- 허가신청내용 명세서가 요구되는 경우, 거래상대방 및 최종수요자의 세부정보 기재가 필요하므로 해당 정보를 미리 확인·제공하여 수출자의 신속한 허가신청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일본 캐치올(Catch-all) 제도 개요

비전략물자(수출령 별표 1의 제16항)*도 수출자가 다음 표에 따라 해당 품목이 우려용도(WMD 및 미사일, 재래식무기 등과 관련용도)로 사용될 위험이 있음을 인지하면 경제산업성의 허가가 필요



*Watch-list 품목 : WMD 등으로 사용될 우려가 높은 품목(40개+시리아 대상 21개)과 재래식 무기와 관련하여 사용될 우려가 높은 품목 (34개, UN무기금수국에만 적용되므로 우리나라 수출 시 미적용) 운영. 단, 이들 품목도 특히 주의를 요할 뿐, 무조건적 허가신청 필요품목은 아님

◆비전략물자는 Inform요건이나 객관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허가가 필요치 않음. 그러므로, 일본 수출자가 품목, 수입자, 거래관련 정보 요청시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한 대응이 됨

※ 캐치올 관련법령 등은 다음 경로를 참조
일본규제 바로알기 홈페이지 | 일본제도 안내 > 자료실 > 법령자료

일본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

수입품목이 일본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일본 수출자에 문의하여 확인 가능

- 일본 전략물자는 수출무역관리령(이하, 수출령) 별표1(제1항~제15항)에 열거된 품목으로 이는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3에 해당

<일본 전략물자 통제목록 구성(수출령 별표 1 제1항~제16항)>

관련 항	통제 종류	통제 품목 분류			
		군용품목	무기류		
1	전략물자 통제	산업용 전략물자 (이중용도 품목)	재래식 무기 관련		
2				WMD 관련	
3					원자력
3-2					화학 무기
4					생물 무기
5					미사일
6					첨단 소재
7					재료 가공
8					전자
9					컴퓨터
10					통신 / 정보보안
11					센서 및 레이저
12					항법장치
13					해양
14					항공우주 / 추진
15		무기류 제외 기타 군용품목			
16	캐치올 통제	1~15항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특정 경우 통제)			

※ 일본 전략물자 통제목록(비공식 번역본)은 일본규제 바로알기 홈페이지에서 제공 (메인 화면에서 일본 수출규제 품목 검색기능 제공)

- 공급처로부터 확인이 어려울 경우 국내 전략물자 판정결과(자가판정 또는 전문판정 선택 시행) 참고 가능

	자가판정	전문판정
판정방법	Yestrade(www.yestrade.go.kr) 접속 후 판정 가능	
판정주체	판정자(해당 업체)	전략물자관리원 전문가
판정 소요시간	실시간 확인 가능	약 15일 이내
비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수입하려는 품목의 특성과 기술사양 등의 확인 필요	

- ◆양국 모두 국제수출통제체제 합의품목을 기본으로 하므로 통제품목 대응소이

일본규제 바로알기 홈페이지



홈페이지 주요메뉴

새소식	공지사항, 보도자료, 일본 규제 동향
일본제도 안내	수출통제제도 개요, 금번조치 개요, 법령개요 품목정보, ICP 검색, 자료실
기업애로 해소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소개, 지원시책 안내, FAQ, 묻고 답하기, 보도자료
참여 · 신청	설명회, 세미나, 방문상담

일본 수출관리 주요 법적근거(기술의 경우 별도 법령에 근거)

법령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외환법)
정령	수출무역관리령(수출령)
성령	화물 등 성령(통제품목의 세부사양 포함)
통달	수출무역관리령의 운용에 대하여, 포괄허가 취급요령등

일본 경제산업성 웹사이트 링크(원문)

수출관리 웹사이트	www.meti.go.jp/policy/anpo
-----------	----------------------------

☎ 관련 문의 : 전략물자관리원(02-6000-6400)

일본 수출규제 대응기관 및 지원사업 연락처 안내

구분	기관명	지원사업	연락처
피해 신고 센터	성남시 기업지원과	수출규제 대응 총괄부서 중앙 및 도, 유관기관 협력, 정보제공 등	729-2631, 2581
	성남산업진흥원		1588-4130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성남상공회의소	피해사례-기업 애로사항 접수	750-2800 781-7904
지방세 지원	세정과 세원관리과 각 구청 세무과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체납처분 유예 등	729-2683, 3272(시청) 729-5141(수정),6141(중원) 729-7141, 7151(분당)
	중앙 신고 센터	전략물자관리원	·일본수출규제 전용 홈페이지 ·정보제공(화이트리스트 품목 일본동향, 제도, 지원시책 등) ·홈페이지, 전화, 방문(사전신청) 상담가능 02-6000-6400 [www.kosti.or.kr]
수출입 지원	소재 · 부품 수급대응센터	·원스톱 애로해결 지원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지원 -무역통관, 금융결제, 품목지원, 자금지원 고용지원, 환경임지 등	1670-7072
	성남세관	·원자재 물량 확보 지원(반출기간 연장 등) ·신속통관 지원(24시간 통관체제 가동) ·대체 수입선 확보 지원 ·세제혜택 및 관세조사 등 유예	697-2595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	·일본 외 국가로의 수입처 다변화 지원 -국내수입자 특별보증, 대체수입처 발굴 특별보험 -대체시장 개척지원 -단기수출보험 보험료 할인 등	259-7604
자금 및 보증 지원	KOTRA (일본수출규제대응팀)	·대체수입처 발굴 지원 ·일본 ICP 기업 활용 지원 (공개 ICP기업과 우리 기업간의 비즈니스 미팅 주선) ·해외 전문인력 유치 지원	1600-7119 (내선 5번)
	성남시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특별보증 지원	729-2582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	·간접경영자금 지원 ·융자금 상환 유예 조치	709-7733 (내선106번)
연구 기관	기술보증기금 성남지점	·단기연장 확대 및 신규보증 특별지원	750-4800
	신용보증기금 성남지점	·피해기업 보증한도 확대, 보증비율, 보증료를 우대 및 단기연장 지원	725-5521
	전자부품연구원 (기업협력플랫폼)	·애로기술 자문 / 공동기술개발 ·신뢰성 시험 / 평가, 연구장비 공동활용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www.ketri.re.kr/platform] (온라인 신청)
	KAIST소재·부품 ·장비기술자문단	·핵심 소재·부품·장비 원천기술 개발 지원 및 자문	042) 350-6119 [http://kamp.kaist.ac.kr]